

의안번호	2212053
의 퇴 인	황명선 의원
회 답 일	2025.9.15.
추 계 번호	25B43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66조의3(손해배상책임) 신설	사업주가 이 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다만,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항)	의무규정
		사업주가 제58조, 제69조, 제95조 및 제117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다만,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2항)	의무규정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제3항)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사업주의 재산상태 7. 사업주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66조의3(손해배상책임)	×	- 미첨부(제1항 및 제2항)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참조
		—	- 미대상 - 개정안은 법원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한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되,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또한, 개정안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¹⁾,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²⁾,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³⁾ 및 제117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 적용되므로⁵⁾,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주⁶⁾로서 이 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1)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급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2)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3)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제93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

4) 제117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제조등금지물질"이라 한다)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2. 제105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이 평가된 유해인자나 제109조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이 조사된 화학물질 중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5)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발생할 손해배상건수, 손해의 정도, 위반조항의 내용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또한, 사업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할 경우 재정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재정소요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파악할 수 없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